

# 프랑스의 직장 내 히잡 착용에 관한 규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황재훈 (프랑스 파리13대학 사법 박사과정)

## ■ 문제의 배경 : 히잡<sup>1)</sup>과 프랑스의 갈등

한여름 남부해변의 모래처럼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은 몇 년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많은 젊은 백인 남성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26일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부르키니(전신을 가리는 수영복)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슬림 여성들이 해변가에서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였다. 이 재판은 7월 14일 니스테러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에 대해 전 총리 마누엘 발스(Manuel Valls)는 “공화국의 상징 마리안느의 드러낸 젖가슴! 인민에게 젖을 주기 위해 그녀는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화국이다”라고 하며 국참사원의 재판을 강력하게 아쉬워하였다.<sup>2)</sup>

무슬림 여성들의 ‘결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제법 거슬러올라간다. 프랑스는 온갖 명분을 통해 그녀들을 벗기고자 했고, 무슬림 여성들은 입기 위해 싸워 왔다. 하지만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 덕분인지 몰라도 프랑스 정부 쪽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이슬람 여성들이 외출 시 착용하는 베일.

2) [http://www.francetvinfo.fr/societe/religion/laicite/polemique-sur-le-burkini/marianne-a-le-sein-nu-elle-n-est-pas-voilee-parce-qu-elle-est-libre-pourquoi-la-phrase-de-valls-ne-passe-pas\\_1801659.html](http://www.francetvinfo.fr/societe/religion/laicite/polemique-sur-le-burkini/marianne-a-le-sein-nu-elle-n-est-pas-voilee-parce-qu-elle-est-libre-pourquoi-la-phrase-de-valls-ne-passe-pas_1801659.html)

## ■ 법적 제재

8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히잡 착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장소에 관해서는 2004년, 그 밖의 공공장소(2004년 법에서 제외된 공공 교육장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0년 법률에 의해 적어도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명확히 정리되었다.

### 교육 장소에서의 제재

세속주의 원칙에 입각한 2004년 3월 15일자 법률 2004-228호는 제1조에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나치고 노골적인 종교적 징표 및 의상 착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은 그 다음 학기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교육법전 제141-5-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반대해석에 의해 탁아소(crèche)와 대학교에서는 히잡 착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양육을 받는 곳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율하지 않는다.

히잡 착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종교와 때로는 인종에 기반을 둔 차별이 되고,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된다. 예컨대,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는 2015년 2월 2일 석사 2학년 보험법 수업시간에 히잡 관련 발언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수업에서 하차한 바 있다. 해당 교수는 1987년부터 파리13대학에서<sup>3)</sup> 수업을 맡아왔으나, 수업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징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특정 학생을 대놓고 지목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수업 맨 앞줄에 여학생 한 명이 히잡을 입고 있었다.

한편 탁아소 내 히잡 착용에 관한 유명한 판결이 있다. 바로 베이비루프(Baby-Loup) 사건이다. 베이비루프는 파리 서쪽 지역인 이블린(Yvelines)에 위치한 사립 탁아소였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율, 즉 고용계약에 따른다. 파기원을 세 차례 오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판결은 사립 탁아소에서 일하는 교사가 히잡 착용

3)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2/10/paris-xiii-un-enseignant-renvoye-apres-s-en-etre-pris-a-une-etudiante-voilee\\_4573827\\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2/10/paris-xiii-un-enseignant-renvoye-apres-s-en-etre-pris-a-une-etudiante-voilee_4573827_3224.html)

을 이유로 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중간에 파기원 판결로 해고무효가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파기원 사회부 판결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도 실시된 바 있다. 설문조사기관인 BVA가 2013년 10월 17~18일에 걸쳐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탁아소 측의 해고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87%였으며, 나아가 일반 회사에도 종교적 징표 착용금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4%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국회는 사립 탁아소에 대해서도 2004년 법률을 확대하는 쪽으로 입법을 발의하여, 해당 법률은 현재 상원(Sénat)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히잡을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업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개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보모 정도가 최후의 보루로 남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부모들이 보모 계약 시 히잡 착용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 공공장소에서의 제재

2010년 10월 11일자 법률 2010-1192호를 통해 프랑스의 입법자는 해당 법률을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기 금지(*la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라고 명명하였다. 이 법률 제1조는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그의 얼굴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Nul ne peut, dans l'espace public, porter une tenue destinée à dissimuler son visage*)”라고 금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공공장소는 공로뿐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에게 출입이 허용되거나 구역무를 제공하는 장소이다(*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er, l'espace public est constitué des voies publiques ainsi que des lieux ouverts au public ou affectés à un service public*)”라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2조 제2항은 제1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타법에 규정된 경우(예: 오토바이 헬멧 착용)는 당연히 제외되고, 추가로 직업적 이유(예: 집도하는 의사의 마스크), 운동 목적(예: 미식축구 선수의 헬멧), 축제(예: 할로윈 가면), 예술가의 공연(예: 길거리의 피에로) 및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예외에 해당된다. 물론 제2조 제2항의 ‘전통적’이라는 용어는 길거

리의 무슬림 전통복장을 가리키진 않는다. 대신 이슬람 사원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법적제재를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1조를 위반한 자는 제재금을 물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과태료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한편 타인에게 얼굴 은폐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상한이 각각 두 배로 증가한다. 이는 여성이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당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프랑스의 입법자는 해당 법률을 통해 공공장소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히잡 착용만 허용했다. 전신을 가리거나, 눈만 보이는 종교의상은 적어도 집 밖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다.

## ■ 사회적 제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법적제재의 대상과 범의 규율영역은 최소 한도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법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외쳐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는 법률문제 이전에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완충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프랑스의 입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 사회는 법이 아닌 기타의 여러 방식으로 무슬림 여성들을 길들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은 암묵적이다. 인종이나 종교차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프랑스의 기업들도 그들을 대놓고 차별하지는 못한다.

## 현실

무슬림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종교적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오히려 행운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애초에 직업의 문이 천국의 문만큼이나 좁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교육자로 활동하는 파티하 아즈블리(Fatiha Ajbli)는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프랑스 내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겪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신앙의 자유가 개인 속에 머물러 있을 때와 달리, 베일(voile)을 쓰는 순간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온다. 무슬림 계율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습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방해한다. 특히 젊은 무슬림 여성이 사회에서 자리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사회적 요구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카락을 가릴 수 없다. 무릇 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무슬림 여성은 그녀의 특이한 외관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그들은 무슬림 정체성을 벗고 프랑스의 정체성을 덧씌워야 한다.”<sup>4)</sup>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 연구결과가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뼈에 박힌 상식일 뿐이다. 사회는 그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영원히 사는 문제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디오 방송 프랑스인포(Franceinfo)는 2013년 실제로 젊은 무슬림 여성들이 취업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취재한 바 있다.<sup>5)</sup>

그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활동과 직업활동 사이의 갈등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포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히잡을 착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생활의 영역에서만 히잡을 착용하기도 했다. 후자 중에서 일부는 그들의 상사나 동료가 그녀가 종교인이란 것을 모를 정도로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아스마(Asma)

당시 21살이 된 아스마(Asma)는 주저없이 히잡을 벗었다. 그녀는 판매원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탁아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숨겨왔던 그녀의 묶은 머리를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결국 하고 싶은 일자리에 종교적 양심을 양보했다. 집에서 놀고 먹거나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4) Les Françaises musulmanes face à l'emploi : le cas des pratiquantes "voilées" dans la métropole lilloise. 2011, Paris, EHESS

5) [http://www.francetvinfo.fr/societe/voile-islamique-ou-travail-des-femmes-face-au-dilemme\\_1651371.html](http://www.francetvinfo.fr/societe/voile-islamique-ou-travail-des-femmes-face-au-dilemme_1651371.html)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 하난느(Hanane)

완전한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 출신도 아니고 완전히 북부 프랑스 출신도 아닌 26세 하난느(Hanane)는 계속해서 “진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다. 최근 몇 년간의 힘들고 전쟁 같았던 구직활동을 상기하며 그녀는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히잡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거절에 익숙해져갔다. 히잡을 착용하고 일자리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순진하고 독실하게 구직활동을 해나갔다. 현재 그녀는 돈을 모아서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묵묵히 견디고 있다. 돈도 없고 학력도 평범한 그녀는 목표를 위해 많은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루이자(Louisa)

루이자(Louisa)는 히잡을 계속 착용하기 위해 직업활동 자체를 포기하기 직전에 있다. 그녀는 제법 학력도 좋다. 법을 좋아해서 파리2대학에서 법학학위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6년 전부터 괜찮은 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며 돈도 제법 벌었다. 문제는 2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때가 바로 그녀가 히잡 착용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직장에서 종교에 관한 논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지켰음에도, 동료들은 물론 상사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이슬람교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점점 냉정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이러한 거리감은 엄청난 단절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리하여 루이자는 그녀의 일자리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대신 언젠가는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무슬림 여성들처럼 그녀 역시 집에서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물론 그녀의 학력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희생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히잡을 강조했던 그녀의 부모 때문에 그녀는 화려한 경력과 학력에도 불구하고 두툼한 월급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고학력의 무슬림 여성인 루이자가 회사보다는 학계 쪽으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다. 그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차후에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무슬림

여성의 취업(Les Françaises musulmanes face à l'emploi)에 관해 박사학위를 쓴 파티하 아즈블리(Fatiha Ajbli) 역시 대학에서 강의활동과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로자(Rosa)

한편 로자(Rosa)는 잠시 히잡은 벗어 두기로 했다. 곧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는 그녀는 일할 때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 26살인 그녀는 히잡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슬람에 관한 여러 망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녀는 괜한 논란을 부르는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긴장관계가 해소되는 쪽에 희망을 걸고 있다.

### 전망

이처럼 사회적 제재는 지금도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더 규율할 필요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유권자에게 환심을 살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립 탁아소 내 히잡 금지조치는 이 논란의 후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에어프랑스 이란 노선 히잡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또 히잡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프랑스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있어서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큰 호재였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여직원을 내보내는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복장규율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작 노동자인 여기장과 여승무원들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여승무원들에게 히잡 착용은 생소할 뿐 아니라, 돈을 받고 개종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 근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승무원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볼라 수준의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이라던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승무원은 회사가 지정하면 근무를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천조각 하나에 예외가 인정된 것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번 논란은 사측에서 여자 승무원 혹은 기장에게 비행 중에는 바지를 입고, 항공기 밖으로 나갈 때에는 머리를 가리도록 한 메모에서 시작되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의 의사가 아니라 취항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란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들도 다 취하는 조치라고 항변하였으나, 노조의 반발이 강

력했다. 결국 이 사건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당 노선에 근무하는 것으로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16년 4월 17일 파리-테헤란 항공 노선부터는 자원자에 한해서 이 노선에 탑승하게 된다. 이는 승무원뿐 아니라 기장 역시 마찬가지이다.<sup>6)</sup>

이처럼 프랑스의 회사들은 히잡을 벗기는 것보다 거꾸로 히잡을 입히는 것에 더 애를 먹고 있다. 역시 젓가슴을 드러낸 마리안느의 나라답게, 입을 권리보다는 입지 않을 권리가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입을 권리도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사립법인에까지 복장규율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극우파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프랑스에도 이런 상식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사회적 제재는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용계약의 영역에서 그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다.

## ■ 고용계약에서의 규율

### 계약의 가능성과 그 한계

그렇다면 고용계약에서 히잡에 관한 규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우선, 복장에 관해서 사업자가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전 제1321조의3의 3호를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조문은 회사의 내규에서 포함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성별, 출신지, 성적취향, 가족관계뿐 아니라 인종과 정치적 성향, 종교적 양심, 그리고 물리적 외형에 기반한 차별이 포함된다. 때문에 입는 옷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물리적 외형에 기반을 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파기원은 반바지 사건에서 보듯이, 사업자는 업무의 특성에 기반하여 상식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의복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2001년 5월 21일부터 반바지를 입고 나온 노동자에 대

6) <http://www.lefigaro.fr/societes/2016/04/04/20005-20160404ARTFIG00131-voile-en-iran-les-hotesses-d-air-france-pourront-refuser-de-se-rendre-a-teheran.php>



하여 여러 차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를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하여 소가 제기되었다. 파기원 사회부는 2008년 11월 12일 판결을 통해 해당 해고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up>7)</sup> 즉 고용계약에서 옷차림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무제한적으로 옷에 관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전 제1121조의1를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조항은 “누구도 업무의 성격상 정당화되거나, 또 비례하지 않는 정도의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제한에 한계를 두고 있다.

### 제약의 방식: 고용계약 또는 내규

근무 시 복장의 제한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그 계약의 내용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이러한 제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분쟁을 예방하고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카톨릭 성당에 고용된 사람에게 무슬림 복장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는 고객응대직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고객응대직에서 고용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많은 해고와 그에 따른 소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넥타이와 정장 착용 요구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일단 채용이 되었고,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히잡을 한 번쯤 착용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의복에 대한 제재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다.

7)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12 novembre 2008, 07-42.220, Inédit

## ■ 결론

유럽인권재판소(CEDH)는 회원국의 세속주의 입법에 관해 상당히 넓은 재량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교실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도록 하는 법<sup>8)</sup>을, 터키에서는 대학교에서 히잡을 금지하는 법<sup>9)</sup> 역시 각각 유효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프랑스의 입법자가 유럽인권재판소 문제로 인해 이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공적영역에서는 계속해서 히잡 문제가 확대되어갈 것이다. 공립교육장소에서의 종교적 징표를 금지하는 2004년 3월 15일자 법률 2004-228호는 이제 조직을 넘어 기능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즉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역이라면,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히잡 착용 제한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사적영역에서는 입법자의 규율이 현재의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현행 입법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계약당사자들의 몫이다. 문제는 점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업주가 무슬림 여성들에게 양보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적 부분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당분간 그녀들 앞에는 점점 더 나쁜 일자리만 주어질 것이다. **KLI**

8) CEDH, 18 mars 2011, Lautsi c/ Italie

9) CEDH, 29 juin 2004, Leyla Sahin c/Turquie

## 참고문헌

- 프랑스 전 총리 마뉴엘 발스의 발언, [http://www.francetvinfo.fr/societe/religion/laicite/polemique-sur-le-burkini/marianne-a-le-sein-nu-elle-n-est-pas-voilee-parce-qu-elle-est-libre-pourquoi-la-phrase-de-valls-ne-passe-pas\\_1801659.html](http://www.francetvinfo.fr/societe/religion/laicite/polemique-sur-le-burkini/marianne-a-le-sein-nu-elle-n-est-pas-voilee-parce-qu-elle-est-libre-pourquoi-la-phrase-de-valls-ne-passe-pas_1801659.html)
- 파리13대학 보험법 교수 실언 후 하차 사건,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2/10/paris-xiii-un-enseignant-renvoye-apres-s-en-etre-pris-a-une-etudiante-voilee\\_4573827\\_3224.html](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5/02/10/paris-xiii-un-enseignant-renvoye-apres-s-en-etre-pris-a-une-etudiante-voilee_4573827_3224.html)
- 베이비루프 사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BVA, 2013. 10. 19. Les Français et la laïcité
- 박사논문, 프랑스 내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겪는 문제, Les Françaises musulmanes face à l'emploi : le cas des pratiquantes "voilées" dans la métropole lilloise. 2011, Paris, EHESS
- 실제 젊은 무슬림 여성들이 취업단계에서 겪는 현실 취재, [http://www.francetvinfo.fr/societe/voile-islamique-ou-travail-des-femmes-face-au-dilemme\\_1651371.html](http://www.francetvinfo.fr/societe/voile-islamique-ou-travail-des-femmes-face-au-dilemme_1651371.html)
- 에어프랑스 파리-테헤란 히잡 사건, <http://www.lefigaro.fr/societes/2016/04/04/20005-20160404ARTFIG00131-voile-en-iran-les-hotesses-d-air-france-pourront-refuser-de-se-rendre-a-teheran.php>
- 참고판례
  - 국참사원 2016. 8. 26. 부르키니 결정
  - 유럽인권재판소 2004. 6. 29. 터키 대학교 히잡 금지 가능 결정
  - 유럽인권재판소 2011. 3. 18. 이탈리아 교실 십자가 허용 결정
  - 파기원 2008. 11. 12. 반바지 결정
  - CEDH, 29 juin 2004, Leyla Sahin c/Turquie
  - CEDH, 18 mars 2011, Lautsi c/ Italie
  -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12 novembre 2008, 07-42.220, Inédit